

○○○, ○○○○ 손해배상 사건 관련 구상금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가소○○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구상금
원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	피고	□□□ 외 8명
판결선고일	[1심]2020. 7. 27. 원고일부승	비고	
사건개요	○ 인천지법 2017가합○○○○○, 서울고법 2018나○○○○○○○○, 대법원 2019다○○○○○○○ 손해배상(기) 사건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주책임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피고들과 그 부모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, 인천광역시교육청(원고)이 사건의 판결금 결과에 따라 원고측에 지급한 금 26,660,260원에 대하여 상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함.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김○○, 황○○, 류○○, 박○○, 피고 류○○은 공동하여 6,665,155원, 피고 이○○, 이○○, 임○○은 공동하여 6,665,1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. 2. 8.부터 2020. 7. 2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, 피고 류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임○○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 소송비용의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(선정당사자), 피고 류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임○○이 부담한다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		
판결이유 및 판결요지	<p>○ 부담부분에 따른 지급의무액 원고와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들, 나머지 피고들이 소외 김◎◎, 김◎◎에게 부담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○○○○○○○○ 손해배상(기) 사건의 판결금채무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1/2로 인정되므로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들,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주문 1항 기재의 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됨.</p> <p>○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. 2. 7.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(선정당사자) 등이 2020. 5. 19.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(선정당사자) 등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소멸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.</p>		
결론	원고에게,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김○○, 황○○, 류○○, 박○○, 피고 류○○은 공동하여 6,665,155원, 피고 이○○, 이○○, 임○○은 공동하여 6,665,15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.		